환경부 공고 제2025-145호

「2025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물기업은 2025.4.11.(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지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 **사업 규모**

○ 총 650백만원 내외 (65백만원×10개사)

※ 정부보조금 70% 이내(65백만원), 기업분담금 30% 이상(28백만원) 5년간 지원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사업 종료 시까지(유효기간 5년)

□ **(신청 및 접수기관)** 한국물산업협의회

2 신청자격 요건

□ 신청자격 필수요건

○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분	필수요건 세부 항목
업종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력	- 최근 2년 이상 회계 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요건 (中 2개 이상 충족)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제3조에 따른 인증***

* 공고문 참고 1의 인증 또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3 참여제한

-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2조제3호의 물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ㅇ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ㅇ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단, 신청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ㅇ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ㅇ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 배제 중인 경우

4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 혁신형 물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지정심의 일정(안)

○ **공고 및 접수** : 2025. 3. 4.(화) ~ 4. 11.(금)

○ **사전검토** : 2025. 4. 14.(월) ~ 18.(금)

○ **1차 서류평가** : 2025. 4. 23.(수)

○ **2차 발표평가 대상 통보** : 2025. 4. 24.(목)

- 발표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
- 발표용 PT 자료 변경 시, 4.28(월) 14:00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 2차 발표평가 당일 자료 10부 지참하여 제출

○ **2차 발표평가** : 2025. 4. 30.(수), 14:00 ~ 18:00

※ 평가장에는 사업책임자를 포함,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 **최종 지정심의** : 2025. 5. 12.(월) ~ 19.(월)(물산업기술심사단)

○ **결과 통보** : 2025. 5. 21.(수)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정서 수여식** : 2025. 6. 3.(예정)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3.4~4.11)	■ 한국물산업협의회(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4.14~18)	■ 한국물산업협의회(사전검토 및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1차, 4.23), (2차, 4.30)	■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지정심의(5.12~19)	■ 물산업기술심사단 지정심의(10개사) ※지정통보(5.21)
▼	
지정서 교부	■ 환경부(10개사)
▼	
협약 체결	■ 혁신형 물기업 ↔ 한국물산업협의회
▼	
(현장) 중간점검	■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의 지원 예산 사용점검 및 현장 확인
▼	
정산 및 사후관리	■ 혁신형 물기업 ↔ 한국물산업협의회 ↔ 환경부

5 지정 유효기간

□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 다만, 매년 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혁신형 물기업 지정 등) 및 시행령 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 혁신형 물기업 지정기업에 대해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및 시행령 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6 지원 내용

□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혁신기술 해외진출, 판로개척 등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구분	지원 내용	금액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기업 현황진단 및 R&D 전략 설계 지원**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기업 현황진단, 기업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기술 가치평가 및 고도화 지원	기업당 65백만원 이내
	연구시설 개선 지원 - 안정적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시설 개선 비용 지원	
	제품 규격화 제작 지원 - 혁신기술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규격화 지원	
혁신기술 해외진출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 테스트베드(Test-Bed) 등을 활용한 신제품 성능평가 지원 - 현지 테스트베드 설치를 통한 기술 검증지원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 해외 발주처 요구를 반영한 변형 시제품 제작 지원	
	국제 인증 획득 및 벤더 등록 지원 - 비관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국제 인증 획득 등을 지원	
판로개척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 지원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 해외 주요 물산업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혁신형 물기업 해외홍보 등 물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 공동 지원(해외전시, 시장개척단, 해외 홍보 등 상시) 프로그램 별도

7 사후 관리

□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 정기평가 : 연 1회, 종합평가 : 5년/1회

○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의견수렴(수시)

○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 혁신형 물기업 지정 자격요건 점검 (1년 단위)

○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기준 검토

8 사업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5. 3. 4.(화) ~ 4. 1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2호, 4호, 5호 서식, 발표자료** 및 **관련 서류 일체**
(「혁신형 물기업 운영규정」 참조)

* 신청일은 마감일과 동일하게 기재 요망

** 별도 양식없음. 혁신기술 중심으로 10페이지 이내 권장

제출예시) 기업명.zip

1. 신청서_기업명
2. 사업현황 설명 자료_기업명
3. 수출실적 집계표_기업명
   3-1. 직간접 수출증명서
4.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_기업명
5. 제출서류_기업명
   5-1. 사업자등록증
   5-2. 중소기업확인서
   5-3. 법인등기부등본
   5-4.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5-5. 재무제표('23&'24년)
   5-6. 인증서(국외)
   5-7. 지식재산권
   5-6. 고용보험명부
6. 가점 서류_기업명
   6-1-a. NET
   6-2. 가점명
7. 발표자료_기업명

※ 재무제표 외, 모든 서류는 '23년, '24년 기준

□ **접수방법 : 메일(innowater@kwp.or.kr)**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 4.11.(금), 18시 이후 자료 제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 전 화 : 02-2634-6799 / 이메일 : innowater@kwp.or.kr

목 록	담당기관 예시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2.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3.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증명서만 인정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5.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6.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 수출실적 조회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진행 ○ 신청일 기준(최근 2년 이상) 최종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외국환은행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등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kr) 또는 은행별 수출실적증명원
7. 해외인증서 등	해당 기업에 한함
8.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증빙서류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 지식재산정보 검색 → 특허·실용신안 → 검색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특허청(www.kipo.go.kr)
9.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사업장→증명원신청,발급→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수 신청 ('23.1.1~12.31/'24.1.1.~12.31./'25.1.1~공고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10. NET/NEP 인증 ○ NET신기술인증 (www.netmark.or.kr) ○ NEP신제품인증 (www.nepmark.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s://www.koita.or.kr/)
11. INNO-BIZ기업 ○ 이노비즈 기술혁신형중소기업(www.innobiz.net) → 이노비즈 발급 신청 → 이노비즈 확인서 온라인 발급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https://innobiz.or.kr/MA/introgate.asp)
12.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 → 사후관리 → 인정서 재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s://www.koita.or.kr/)
13. 기타 가점 증빙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 참고 >

해외 인증 예시

국가명	인증제도
미국	NSF, ANSI(미국규격협회), WQA(미국수질협회), IAPMO(배관자재환경인증),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ASME(미국기계학회), ASCE(미국토목학회), TAPE(미국워싱턴주 강우처리기술인증), EPA(환경보호국인증), CCR(미국캘리포니아주 환경인증), NRTL(국가인정시험소), Water Sense(환경보호국인증), Gold Seal(음용수관련인증), UPC(배관 및 기계인증), UL(보험자안정시험인증), ECV(환경성주장검증), ETV(환경기술검증)
EU(유럽연합)	CE(유럽공동체 마크), ETV(환경기술검증)
영국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BSI(영국표준협회)
프랑스	ACS(보건위생적합증명), NF(프랑스표준규격)
독일	DIN(독일표준), KTW test certification(식수관련인증)
네덜란드	Kiwa Water Mark(물위생안전인증)
덴마크	Drop Mark(식수접촉제품인증)
노르웨이	NIPH(음용수관련인증)
호주	Water Mark(배관제품인증), WELS(물효율라벨링제도), AS(규격협회)
캐나다	CSA(캐나다 표준규격), Water sense, ETV(환경기술검증)
싱가포르	Singapore WELS(싱가포르물효율)
일본	JIS(일본표준), JWWA(일본수도협회), ETV(환경기술검증)

※ 이외 인증은 환경부 고시 제2022-75호 제3조에 따라 평가단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함